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·점검 대상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”이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시설안전인증 등급·유효기간)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심사분야”란 별표와 같다.

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(이하 “안전인증”이라 한다)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③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안전인증을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안전인증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등)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

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인증기관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,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인증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인증 여부 및 제3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등급·유효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안전인증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인증 평가에 참여한 자는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(재인증 대상)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”이란 건축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.

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”란 「건축법」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.

제6조(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) 영 제20조제9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,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
2. 결함부위의 확정방법에 관한 사항
3.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5. 시설물 하중내하력(荷重耐荷力)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6.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
7.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등제에 관한 사항

제7조(보존기간)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
1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
2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

제8조(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) ①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24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
2.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
3. 누수·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
4.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

③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④ 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개축 등 조치방식, 재정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안전성평가 절차 등) ① 영 제26조제4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학교·학생 안전 확보 방안
2. 학교·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
3.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

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완

조치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- ③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독 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자 참여 절차 등)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·설계과정에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, 학교의 교수·학습 활동에 필요한 적정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를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,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·운영 등을 통하여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.

- ③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립된 교육시설에 대해 사용자 만족도, 효과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④ 그 밖에 사용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전문기관의 지정 절차)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-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

2. 전문기관의 운영계획

3.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

4. 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

5.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

- ③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안전인증 심사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인증 분야	주요 내용
시설안전	구조, 전기, 기계, 가스, 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내재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평가
실내환경안전	교육시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, 안전환경 조성, 건축재료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
외부환경안전	교육시설 주변 보행자 교통 안전, 감시·보안 체계 등 외부 환경 등에 대해 평가

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
신청인	기관명			고유등록번호
	주 소			대표자 성명
	실 무 담당자	성명	부서	직위
		Tel	Fax	E-mail
신청대상 건축물	건축물명			착공(예정)일
	소재지			준공(예정)일
	연면적			용도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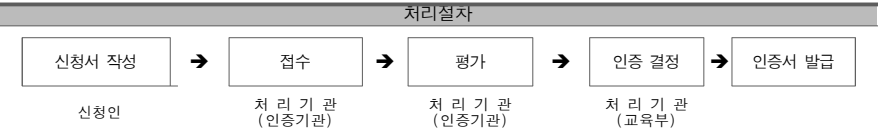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 접수기관

(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 평가서 2.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안전조치 명령서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이 소유·관리·점유하고 있는 시설·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
가. 시설명·지역명
나. 점검등의 개요
다. 점검등의 결과

2.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

3. 안전조치 이행기한

4. 안전조치 이행사항 및 방법

5.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(안전조치 결과 보고서 첨부)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기관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안전조치 결과 보고서

안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	성명(대표자)	
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
안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·지역명 또는 위치		
안전조치 이행 주요내용	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: (서명 또는 인)

기관의 장 귀하

구비서류	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사진 등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

보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	성명(대표자)	
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
보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·지역명 또는 위치		
보완조치 이행 주요내용	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: (서명 또는 인)

기관의 장 귀하

구비서류	보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사진 등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전문기관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신청기관	기관명		
	대표자 성명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소재지		
	전화번호		
	설립 근거		
	설립 목적		
	설립 연월일		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_____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.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.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4. 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5.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	수수료 없음
교육부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) 또는 사업자등록증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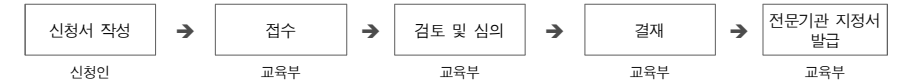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교육부장관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전문기관 지정서

기관명

대표자 성명

법인등록번호
(사업자등록번호)

소재지

전화번호

설립 근거

설립 목적

설립 연월일

유효기간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1조에 따라 _____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

과태료처분 통지서

제 호

과태료 납부대상자 인적사항	업체[기관] 명	
	법인[고유] 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:)
	성명(대표자)	
위반사항		
관련근거		
과태료 금액		

- 귀하께서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0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
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
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 및 별표에 의한 과태료
부과기준에 따라, 과태료 금액이 산정되며,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
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○○기관의 장

첨부서류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. 끝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